

이 보도자료는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우진
전화 031-5182-4290 / 팩스 031-5182-4555

보도자료
2024. 8. 14.(수)

유명 유튜버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유튜버 4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오늘(8. 14.)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甲을 상대로 사생활 등 의혹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3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유튜버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 A·B는 공모하여 甲에 관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5,50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乙(아프리카TV 방송인)의 사기 범행 관련 영상을 내려주겠다며 2,200만원을 갈취하였으며,
- 피고인 C는 乙에게 '사기 범행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될 것'이라고 위협하여 3,00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C·D는 피고인 A에게 '甲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A의 공갈범행을 각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 한편, 甲을 공갈한 E(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재청구

●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한편, 오히려 甲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하여 '2차 피해'까지 가했는데,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피고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피고인 [4명]

- 피고인 A(남, 31세, 유튜버 “구제역”, 구속)
- 피고인 B(남, 32세, 유튜버 “주작감별사”, 구속)
- 피고인 C(남, 35세, 유튜버 “카라콜라”, 구속)
- 피고인 D(남, 39세, 유튜버 “크로커다일”, 불구속)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죄 명
A	'21. 10. 유튜버 甲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하여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	협박
	'21. 10. 乙에게 '네 스캠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내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며 2,200만원 갈취	공갈
	'23. 5.경 甲에게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하여 촬영 강제	강요
A, B	공모하여, '23. 2. 甲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5,500만원 갈취	공갈
C	'22. 6. 乙에게 '네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폭로하는 기사가 보도될 것이다. 보도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3,000만원 갈취	공갈
	'23. 2. 피고인 A에게 '甲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	공갈 방조
D	'23. 2. 피고인 A에게 '甲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	공갈 방조

3

주요 수사 경과

- '24. 7. 16. 甲의 A·B에 대한 고소장 접수
- '24. 7. 26. A·B 구속영장 발부
- '24. 8. 2. C 구속영장 발부, E(甲을 공갈한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24. 8. 14. A·B·C 구속 기소, D 불구속 기소, E 구속영장 재청구

4

수사 결과 및 의의

① 타인의 약점 폭로를 수익모델로 삼은 약탈적 범행

- 피고인들은 타인의 약점이나 불행한 사고 등을 알아낸 후 자극적으로 폭로·왜곡하는 콘텐츠를 동영상 플랫폼에 제작·유포하여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을 취득해왔음
-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 운운하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사실은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상 집단괴롭힘)에 불과하거나 타인의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한 것임
 - 겉으로는 '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하였음
- 특히, 피고인 A, B는 여성 피해자 甲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활동한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하였음

② 이른바 「사이버렉카 연합회」의 조직적·계획적 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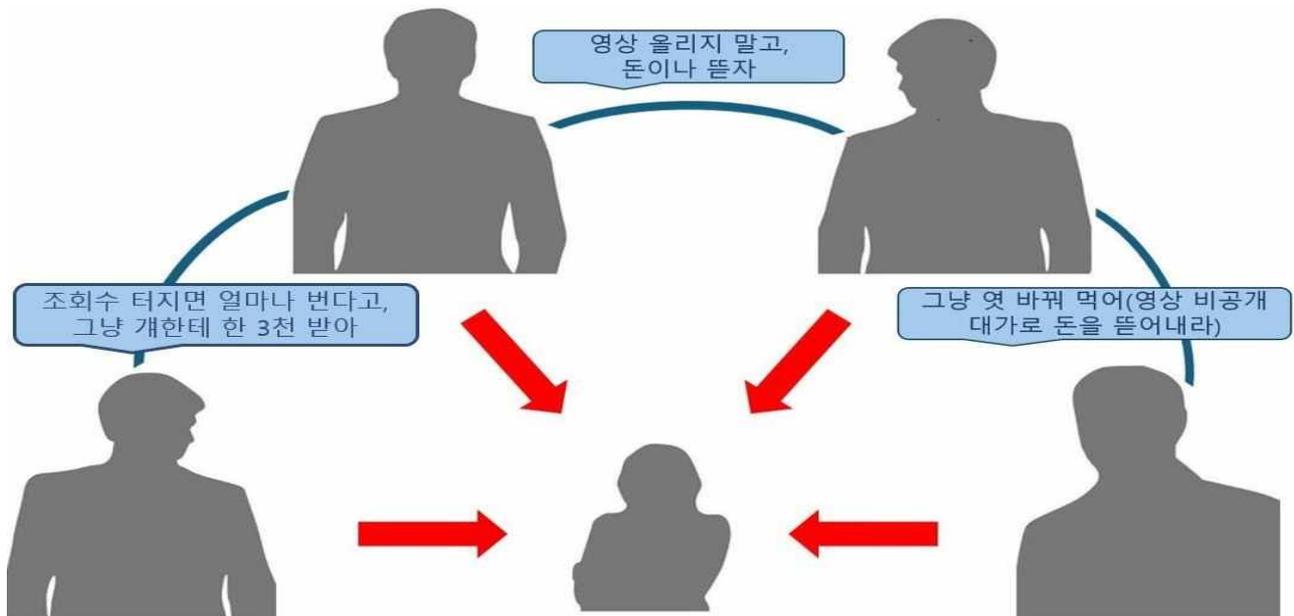
- 피고인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왔음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가 甲에 관한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그 직후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를 주고받았음

[사이버렉카 단체대화방 · 통화 주요내용]

- ▶ (독려, 부탁) ‘고소당해봤자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난다’,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꺾어주십시오.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등
- ▶ (조언) ‘네가 甲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옛 바꿔먹어라(영상 비공개를 대가로 돈을 뜯어내라)’, ‘일단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甲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등
- ▶ (조율)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게 낫지 않나’, ‘그냥 한 3천 받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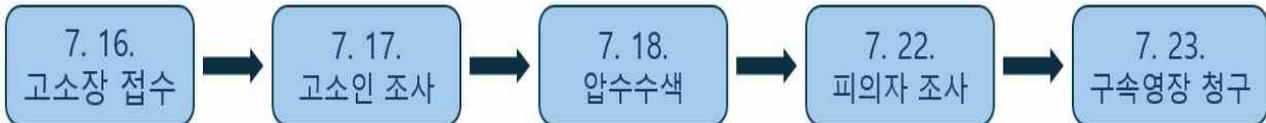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통화녹음, 압수한 문서 등 곳곳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일부 피고인들이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되었음
- 또한, A는 甲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천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겁주는 등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였음



- 이 사건이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단체대화방 분석 등으로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 · 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진 것임

③ 검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직접 수사로 추가피해 등 차단

- 검찰총장의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고소장 접수 즉시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회적 논란 확산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소장 접수 1주일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 이 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는 검찰 직접 수사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
 - (실시간 증거인멸) 피고인들은 수사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하여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였음
 - (사회적 논란) 특정 유튜브 채널의 폭로 이후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
 - (2차 피해 발생)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후 이를 해명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콘텐츠를 유포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온라인상에 甲을 비난하는 댓글이 확산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④ 동영상 플랫폼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전세계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만큼 동영상 플랫폼은 기성 언론과 방송을 위협하고,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반면, 그 파급력에 걸맞은 자정시스템이나 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하여, 사생활 노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타인의 약점을 수익 모델로 삼는 신종 약탈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음
 - 동영상 제작에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방송장비 외에는 제작비가 거의 없어 진입장벽이 낮음

- 콘텐츠의 자극성과 수익(조회 수)이 비례관계에 있어 경쟁적으로 폭로를 일삼고, 심지어 사실관계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음
- 기성 언론과 같이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이 없음
- 동영상 플랫폼 업체도 유해 영상물에 대해 수익금 지급을 제한(일명 '노란 딱지' 제도)하는 등 나름의 자정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영상물의 유해 여부 판정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어 오작동의 위험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외사업자(유튜브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에 한계가 있음
- 결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악성 콘텐츠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이른바 사이버불링 등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이 긴요함

5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